

#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당초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(2018년)을 기준으로 타 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2015~2018년으로 계획하였으나, 2015년부터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예수금 상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상환계획을 변경하고,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통합관리 존속기한 연장(2022년까지)을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
-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 설정(안 제4조)
- 나.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
- 보유자금 관리 근거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을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으로 변경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8. 5. 18. ~ 6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##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단서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제2항”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8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제7조(통합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을 군의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.</p> <p>제7조(통합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9조제2항----- -----.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유동근
연락처	(033) 330 - 2206